



DONG WON

ESG

윤리규범

1

6

문서번호

DIS-ESG-S01

제 정

2022.10.01

개정번호

0

윤리규범

동원산업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관리 한다.

1. 윤리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 ① 당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한다.
- ② 당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된다.

나. 이해상충 방지

- ① 당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
- ② 당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악속·제안·허가·제공 안 한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 ①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한다.
- ② 당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당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단합하지 않는다.
- ④ 당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 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라. 위조부품 방지

- ① 당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하지 않으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하지 않는다.
- ② 당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고객사에 즉각 통보한다.
- ③ 당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 수출제한 준수

- ① 당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한다.
- ② 당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하지 않는다.
- ③ 당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필요 시 현대자동차/기아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한다.

바. 내부 고발 및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회사는 내부고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내부고발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DONG WON	ESG	2 / 6	
		문서번호	DIS-ESG-S01
	윤리규범	제 정	2022.10.01
		개정번호	0

않으며, 관련된 보복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 자금 세탁 방지
당사는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등과 자금세탁과 관계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 정보 공개
당사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지적재산권 등 정보보호
① 당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당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③ 당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 책임있는 자재 구매
① 당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② 당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당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확인하거나 대외인증받도록 한다.

2. 환경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①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한다.
② 당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한다.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① 당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② 당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 수자원 관리
① 당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② 당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DONG WON	ESG	3 / 6	
		문서번호	DIS-ESG-S01
	윤리규범	제 정	2022.10.01
		개정번호	0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① 당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② 당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한다.

마. 폐기물 관리

① 당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② 당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한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한다.

③ 당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바. 화학물질 관리

① 당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한다.

② 당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3. 노동/인권

가. 차별 금지

① 당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② 당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③ 당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는다.

나.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① 당사는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며(주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을 모니터링, 임금결정 시 반영, 참고한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한다.

② 당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당사는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다. 근로시간 관리

① 당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한다.

② 당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③ 당사는 임직원에게 1 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한다.

 DONG WON	ESG	4 / 6	
		문서번호	DIS-ESG-S01
	윤리규범	제 정	2022.10.01
		개정번호	0

라. 인도적 대우

- ① 당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한다.
- ② 당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③ 당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결사의 자유 보장

당사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협의회(별칭 동원한마음위원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바. 아동노동 금지

- ① 당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한다.
- ② 당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으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③ 당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 강제노동 금지

- ①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한다.
- ② 당사는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당사는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치를 취한다.

4.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①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한다.
- ② 당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한다.

나.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 ① 당사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한다.
- ② 당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한다.

 DONG WON	ESG	5		6	
		문서번호		DIS-ESG-S01	
	윤리규범	제 정		2022.10.01	
		개정번호		0	
③ 당사는 근로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며,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한다.					
다. 비상상황 대응					
① 당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춘다.					
②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다.					
③ 당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라. 사고 관리					
①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②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③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 안전 진단					
① 당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리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기구·설비를 개선하난.					
② 당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한다.					
③ 당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으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바. 보건 관리					
① 당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하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③ 당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